

[붙임]

2020학년도 제1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취소) 안내

1. 모집인원: [붙임1] 참조

가. 다전공

1) 제2전공: 학부(과)별 1학년 입학정원의 100%

2) 연계전공: 60명

3) 융합전공

가) 60명 이내

나) LINC+사업 또는 SW중심대학사업 참여학생 및 참여희망학생에 한하여 모집(LINC+사업: 02-2287-5208 / SW중심대학사업: 02-2287-6448~9)

나. 부전공: 약간명(단,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신청 또는 전환 불가)

2.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학기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재학생
학점	2013학번 이전	35학점 이상 취득(예정)
	2014학번 이후	33학점 이상 취득(예정)
	* 2020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성적 미포함	

가. 교직목적 사범계 학과의 제2전공 신청은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만 가능하며, 교직목적 부전공 신청 불가

나. 사범계 학과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설치 학과(문헌정보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의 제2전공은 '일반 다전공' 또는 '교직목적 다전공' 중 선택하여 신청

3. 졸업기준

가. 다전공

1) 입학학년도 또는 복학 원학년도 교육과정 이수

* 복학 원학년도: 복학 시 함께 졸업을 하게 되는 원학년도(단, 2013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총 140학점 이상 이수)

2) 편입생: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주전공 및 다전공의 취득학점 이수

나. 부전공: 해당 학과 전공 이수구분 상관없이 21학점 취득

4. 선발방법

가. 신청자 중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단, 예체능계열의 경우, 실기전형 통과자로 함)

나. 총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모두 선발

다. 일반 다전공과 교직목적 다전공 신청자의 총 평점평균을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음

라.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조치: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및 일어교육과 재학생은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과로 다전공 가능

5. 신청 및 취소기간: 2020.05.6.(수)~05.20.(수) <예체능계열 실기전형 일정 추후 개별 통보>

6. 결과발표: 2020.7.24.(금) 예정

붙임 1. 2020학년도 제2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선발인원 1부.

2. 예체능계열 실기전형 내용 및 기준 1부.

2020. 05.

서울 캠퍼스 교무처장

2020학년도 제1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선발인원

※ 인공지능융합전공의 경우 모집 관련하여 반드시 SW중심대학사업단에 개별연락하여 별도확인 요함.

대학	학부(과)		다전공		부전공	주관학과
			전체	교직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콘텐츠학부	역사콘텐츠전공	35	-	약간명	
	인문콘텐츠학부	지적재산권전공	25	-	약간명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30	6	약간명	
	공간환경학부		44	-	약간명	
	공공인재학부		55	-	약간명	
	가족복지학과		30	-	약간명	
	국가안보학과		34	-	약간명	
	문화콘텐츠연계전공		60	-	-	역사콘텐츠전공
	빅데이터과학연계전공		60	-	-	문헌정보학전공
	콘텐츠제작연계전공		60	-	-	한일문화콘텐츠전공
	공간정보빅데이터연계전공		60	-	-	공간환경학부
	아동·청소년상담연계전공		60	-	-	가족복지학과
	영유아체육과건강교육연계전공		60	-	-	가족복지학과
	디지털인문정보융합전공		60	-	-	역사콘텐츠전공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45		약간명	
	영어교육과		45		약간명	
	교육학과		30		약간명	
	수학교육과		36		약간명	
경영 경제 대학	경제금융학부		68	-	약간명	
	경영학부		85	-	약간명	
	글로벌경영학과		73	-	약간명	
	핀테크융합전공		60	-	-	경제금융학부/LINC+사업단
	부동산학연계전공		60	-	-	경제금융학부
	금융ICT연계전공		60	-	-	경제금융학부
	빅데이터융합전공		60	-	-	경영학부/LINC+사업단
	스마트생산융합전공		60	-	-	경영학부/LINC+사업단
	신산업비즈니스융합전공		60	-	-	경제금융학부/LINC+사업단
융합 공과 대학	SW융합학부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75	-	약간명	
		게임전공	35	-	약간명	
		애니메이션전공	23			
		한일문화콘텐츠전공	27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90	-	약간명	
		융합전자공학전공	32	-	약간명	
		전기공학전공	32	-	약간명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전공	39			
		화학에너지공학전공	39	-	약간명	
		화공신소재학전공	39	-	약간명	
	지능정보융합전공		60	-	-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인공지능융합전공		약간명*	-	-	SW융합학부/SW중심대학사업
문화 예술 대학	외식의류학부	식품영양학전공	31	6	약간명	
		의류학전공	26	-	약간명	
	스포츠무용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33	-	약간명	
		무용예술전공	31	-	약간명	
	미술학부	조형예술전공	22	-	약간명	
		생활예술전공	33	-	약간명	
	음악학부		59	-	-	
	외식경영학연계전공		60	-	-	식품영양학과
	미디어아트연계전공		60	-	-	조형예술학과
	음악경영학연계전공		60	-	-	음악학부
	문화예술융합전공		60	-	-	음악학부

예체능계열 실기전형 내용 및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비대면 평가방식으로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학과(전공)명	실기능력 최저기준	실기고사 내용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제자리 멀리뛰기 남자 227cm이하 여자 182cm이하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높이뛰기(서전트) 남자 53cm이하 여자 20cm이하	제자리 높이뛰기(서전트)
	20M 왕복달리기 남자 18.41초 이상 여자 20.41초 이상	20M 왕복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남자 40개 이하 여자 35개 이하	윗몸 일으키기
	위의 4종목 중 3종목 이상 최저기준 이하 점수로 취득할 경우 불합격 처리	
조형예술학과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포트폴리오 심사
생활예술학과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포트폴리오 심사
무용예술학과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중 택 1 (3분 이내 작품 시험)
음악학부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피아노> - 사전에 공지한 실기 2곡 악보 없이 연주 - 전공교수 상담 <성악> - 독일, 이태리 가곡에서 각각 원어로 1곡씩 (한국은 오라토리오나 오페라 아리아도 가능함. 단, 오라토리오나 오페라 아리아는 원조, 원어로 부르되 가곡과 아리아는 언어가 달라야 함. 암보를 원칙으로 함.) <뉴미디어작곡> - 조성음악분석-화성풀이 및 형식분석(반영률 20%) - 화성학(반영률 20%) - 청음(반영률 10%) - 작곡-론도형식의 독주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곡 작곡 (반영률 50%) <관현악> - 자유곡 1곡 (관현악기, 암보로 연주)

「학칙」 제44조의2

제44조의2 (다전공, 부전공 및 심화전공 이수 의무) ① 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다전공(제2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융합전공 등), 부전공 및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 및 예외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에 관한 규정」 제12장

제12장 다전공, 부전공 및 심화전공

제57조 (다전공 신청 및 선발방법) ① 다전공은 1학년 2학기 재학생(2개 학기 수료학점 이수예정자)부터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학기의 계절수업 학점 및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간호학과를 제외한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전공)를 다전공 이수 대상 학과(전공)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전공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선발방법은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별로 구술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 (다전공 이수 및 학점인정) ① 다전공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학과(전공)별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의 최소 전공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연계전공과정을 다전공하는 자는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소정의 전공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 및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기설계융합전공을 다전공하는 자는 둘 이상의 전공으로 융합설계한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설계융합전공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융합전공을 다전공하는 자는 융합전공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소정의 전공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 및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캠퍼스간 복수전공을 하는 자는 소정의 전공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캠퍼스 간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다전공의 전공교과목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최대 6학점까지 다전공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는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다전공 교과목을 해당 전공 교과목과 다른 이수구분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해당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⑨ 편입학자의 다전공 이수 시 제1전공(원전공)도 소속 원학년 학과(전공)의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이수구분별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59조 (다전공의 취소) ① 다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전공 취소자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

③ 다전공 이수자가 다전공을 취소하더라도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

제60조 (다전공 사정심사) ① 다전공 사정심사는 제1전공과 동일한 절차로 하되 다전공하는 학과(전공)에서 시행한다.

②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외에 논문(시험, 실기발표 등)을 다전공하는 학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다전공 학위수여) ① 제1전공 및 다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복수의 학위를 수여하며 소속은 제1전공으로 한다.

② 다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제1전공의 졸업요건이 미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제62조 (다전공 제한사항) ① 교직과정을 목적으로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를 다전공할 경우, 제1전공이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 소속 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일반계학생이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설치 학과(전공)를 다전공 할 경우 최소 전공이수학점은 제58조 제1항과 같다.

③ 다전공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다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 (부전공 신청 및 선발방법) ① 부전공은 1학년 2학기 재학생(2개 학기 수료학점 이수예정자)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학기의 계절수업 학점 및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부전공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간호학과를 제외한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전공)를 부전공 이수 대상 학과(전공)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전공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부전공 선발인원은 학과(전공)별로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하되, 부전공 정원 및 선발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 (부전공 이수학점) ① 일반 부전공자의 경우 학과(전공)별 전공교과목 내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21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경우 학과(전공)별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항은 2007년입학자까지 적용)

제65조 (부전공 교과이수 및 취소) ① 부전공 교과목을 사전에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부전공 승인과 동시에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②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자의 기취득학점은 일반선택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제66조 (부전공 기본이수영역교과목 이수)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사범대학의 학과와 교직과정설치전공(학과)을 부전공하는 경우 기본이수영역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 (부전공 사정심사 및 제한사항) ① 사정심사는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시행한다.

② 부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의2 (심화전공 이수) 심화전공이라 함은 제1전공의 심화된 내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세부운영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4조의2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57조 내지 제62조에 따라 상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 다전공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1>

제2조 (모집인원) 다전공 모집인원은 학부(과)별 2학년 입학정원의 100% 이내에서 정하되,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3조 (신청자격) ① 1학년 2학기(2개 학기) 과정이상을 수료(예정)한 재학생이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학기의 계절수업 학점 및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7.09.01>

② 2013학번 이전은 3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한다. <개정 2017.09.01>

③ 2014학번 이후는 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한다. <개정 2017.09.01>

④ 2016학번 이후는 다전공(제2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융합전공 등), 부전공,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자, 공학인증대상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 특별전형, 계약학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및 천안캠퍼스 소속 학생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09.01>

제4조 (신청시기)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매학기 5월 및 11월에 다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절차 및 선발) ① 다전공 이수 희망자는 다전공 학부(과)장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한 "별지 1"의 이수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01>

② 다전공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학부(과)별로 구술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추가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1. 모집인원 범위 내 신청자 중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7.09.01>

2. 추가전형(구술, 필기, 실기 등)을 실시한 학부(과)의 경우 추가전형 최저기준 통과자 중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7.09.01>

3. 총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선발한다.

4. 일반 다전공 신청자와 교직목적 다전공 신청자의 총 평점평균을 구분하여 전형하지 않는다.

5. 다전공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다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이수기간) ① 다전공은 승인된 학기부터 시작되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09.01>

② 제1전공 졸업시까지 소정의 다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전공 졸업요건 미충족 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개정 2017.09.01>

제7조 (이수제한) ① 간호학과를 제외한 소속 캠퍼스 내 모든 학부(과)를 다전공 이수 대상 학부(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전공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9.01>

②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사범대학 다전공을 하는 경우 다전공은 이수하되 교원자격증은 수여받지 못한다.

③ 폐과된 학부(과)로의 다전공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9.01>

④ 다전공 선발 시 해당전공을 제2전공으로 표기하며, 제3전공까지 선발될 수 있다. <신설 2017.09.01>

제8조 (교육과정이수) ①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입학년도 또는 복학년도의 해당 학부(과) 졸업이수학점(각 학부(과)별 36학점 ~ 5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의 최소전공인정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9.01>

②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다전공의 전공교과목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최대 6학점까지 다전공 학부(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는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9.01>

③ 편입학자 다전공 이수 시 제1전공(원전공)도 소속 원학년 학부(과)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이수구분별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제9조 (취 소) ① 다전공 이수를 취소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5월 및 11월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2"의 취소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01>

② 다전공 취소자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17.09.01>

③ 다전공 이수자가 다전공을 취소하더라도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10조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다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제1전공의 학위명과 다전공학과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7.09.01>

③ 다전공 중도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해당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09.01>

④ 다전공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이 미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학위수여가 불

가능하다. <개정 2017.09.01>

제11조 (세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조치)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불어교육과 및 일어교육과 재학생은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과로 다전공이 가능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조치)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이 통·폐합되는 경우(법학과, 행정학과, 불어교육과, 일어교육과, 정보보안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피아노과, 성악과, 뉴미디어작곡과, 관현악과)는 다전공 진입을 불허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4조의2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63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상명대학교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1>

제2조 (모집인원) 부전공 모집인원은 학부(과)별로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부전공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3조 (신청자격) ① 1학년 2학기(2개 학기) 과정이상을 수료(예정)한 재학생이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학기의 계절수업 학점 및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7.09.01>

② 2013학번 이전은 3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한다. <개정 2017.09.01>

③ 2014학번 이후는 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한다. <개정 2017.09.01>

④ 2016학번 이후는 다전공(제2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등), 부전공,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자, 공학인증대상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특별전형, 계약학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및 천안캠퍼스 소속학생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09.01>

제4조 (신청시기) ①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매학기 5월 및 11월에 부전공을 신청할 수 한다.

제5조 (신청절차 및 선발) ① 부전공 이수 희망자는 부전공 학부(과)장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한 "별지 1"의 이수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01>

② 부전공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학부(과)별로 구술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추가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1. 추가전형(구술, 필기, 실기 등)을 실시한 학부(과)의 경우 추가전형 최저기준 통과자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2. 부전공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부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이수기간) ① 부전공은 승인된 학기부터 시작되며 부전공 교과목을 사전에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부전공 승인과 동시에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개정 2017.09.01>

② 제1전공 졸업 시까지 소정의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전공 졸업요건 미충족 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개정 2017.09.01>

제7조 (이수제한) ① 간호학과 및 연계전공을 제외한 소속 캠퍼스의 모든 학부(과)를 부전공 이수 대상 학부(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전공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9.01>

② 폐과된 학과로의 부전공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9.01>

제8조 (교육과정이수) ①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학부(과)별 전공교과목내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21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② 편입학자 부전공 이수 시 제1전공은 소속 원학년 학부(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제9조 (취 소) ① 부전공 이수를 취소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5월 및 11월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2"의 취소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01>

② 취소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개정 2017.09.01>

제10조 (학위수여) ① 부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제1전공의 학위명에 부전공 이수 상황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7.09.01>

② 부전공 중도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해당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09.01>

③ 부전공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조치)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이 통·폐합되는 경우(법학과, 행정학과, 불어교육과, 일어교육과, 정보보안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피아노과, 성악과, 뉴미디어작곡과, 관현악과)는 부전공 진입을 불허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